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갈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산업 분야에서 저작권 갈등은 지금까지 주로 지상파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갈등이나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 갈등 문제가 주로 이슈가 되어왔지만, 개인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간의 갈등 이슈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자료에 입각한 학문적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신탁관리단체, 학계 등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갈등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자 간의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저작권료의 수준과 책정방식,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저작물 이용 자료의 공유 문제 등에 대해 양자 간에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저작권료 승인구조의 개선이나 저작권법의 개선,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방송사업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chung94@kyungwon.ac.kr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지금까지 방송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주로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 간의 저작권 귀속 논쟁과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김재영, 2003; 정윤경, 2005, 2008; 은혜정, 2006; 이은지, 2006; 조의진, 2006; 김대호, 2007; 김영덕 외, 2007; 이제영·유승관, 200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김인경·조미애, 2008), 최근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미디어산업 가치사슬구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주정민(2011)은 스마트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불법 침해사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매체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사슬구조에서 콘텐츠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N스크린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장에서 콘텐츠 유통과 공급을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콘텐츠 생산자가 일정 수의 조직 단위에서 수많은 개인 단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사업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수많은 개별 저작권자와 개별 협상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집중관리를 해주는 신탁관리단체와 협상을 체결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체들은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된다(김희수, 2010). 개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신탁관리단체에 위임하고, 방송사업자들은 이들 신탁관리단체들과 협상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양자 간에 다양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09년 4월 17일 저작권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2008년에는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미디어플러스와 방송실연자협회간의 분쟁, 공공채널(KTV, NATV, USB 등)과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기타 자체제작이 존재하는 독립 PP와 방송실연자협회 간에 분쟁이 있었다. 또한 2007년에는 투니버스, 챔프, 재능 등 애니메이션 채널과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2005년에는 홈쇼핑채널과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간의 분쟁에 이어 지역민방(제주방송, 강원민방)과의 분쟁, 2004년에는 케이블 TV방송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간의 분쟁이후 고소 취하 등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¹⁾ 이와 같은 분쟁들은 방송 산업의

1) 분쟁사례들은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사례들이며, 본 연구의 초점은 갈등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면의 한계상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의 이용과 유통분야가 차지하는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의 잠재적 요인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양자 간의 관계 구조나 분쟁내용은 현장의 갈등현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김민호·정인숙·지성우(2009)의 연구²⁾ 외에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를 둘러싼 분쟁의 구도와 분쟁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의 저작권 갈등 문제에 대해 법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저작권 신탁관리의 개념과 신탁관리단체 유형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집단이 저작자를 대신해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 및 인접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다. 저작권법 제2조 26호에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체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제도인 것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을 신속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오익재, 2008).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저작권법 개정시 제78조(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제79조(감독), 제80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허가하면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2) 이 논문은 김민호·정인숙·지성우(2009)가 수행한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출판권, 저작권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한편,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권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권접물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26호 및 제27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에서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탁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진입 및 사업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는 그만큼 신탁업무가 전문적이며 이해관계에 얽힐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기태, 2008). 또한 신탁관계가 성립되면 저작권자는 실질적인 소유권만을 가질 뿐 법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양도하게 되므로 더 이상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박경신, 2008, 92~93).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허가는 일저작물 일권리단체(一著作物一權利團體)의 원칙 하에 설립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신탁관리업은 사실상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분야별로 하나씩의 신탁관리단체가 허가되어 활동 중이며, 2011년 현재 12개 단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 신탁관리단체들이 방송사업자들과 저작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의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사용의 N스크린화로 인해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과거에 없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새롭

<표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및 주요 관리대상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 상 음반 콘텐츠 저작권
한국방송작가협회	각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 저작물 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 저작물 방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예술 실연자들의 저작권인접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권인접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 콘텐츠 복제, 전송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등의 공연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복사 전송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물의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게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허가를 통해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신탁관리업체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 신탁관리단체만 믿고 저작물을 이용하다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가 등장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³⁾ (김기태, 2008).

2007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105조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하여 허가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그리고 관련 업무 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출 것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저작물의 이용자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승인을,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자들의 편이를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열람 가능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류종현, 2009, 39~40).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권리와 맺는 위탁관리계약은 현행법상 ‘대리중개계약’과 ‘신탁관리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신탁관리계약을 통해 집중관리단체에게 위탁되는 관리의 범위는 대리중개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탁관리를 하는 집중관리에 대한 권리자의 기대와 함께 불만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일부 권리의 위탁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저작권신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서울지방법원 2003. 3. 1, 2003카합 190 가처분 이의판결)이 대표적인 예이다(방석호, 2007).

한편 저작권관리업은 국가마다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서 영국과 미국처럼 영미법계의 국가는 저작권관리업 자체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반면, 일본이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저작권관리업을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고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해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선희 외, 2009 참고).

2)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그

3) 2011년 2월에는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교과서 참고서 등에 재수록하는 2차 사용의 저작권을 관리해 주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회원 작가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탁 저작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한국일보, 2011. 2. 24).

들이 가지는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권 권리의 처리나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나 저작물의 이용자 등을 차별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많다는 것이 법학계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이다(이상정, 2006; 윤선희·조용순, 2009; 유수현, 2010).⁴⁾ 임원선(2006)은 신탁관리업체가 독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9년에는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이 개선된 내용의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윤선희·조용순(2009)은 이에 대한 법논리적 분석을 통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저작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10년 12월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개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탁관리단체가 행하는 역할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저작물 이용자 입장에서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가지는 불만요인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유의선(1997)의 분류에 따르면 방송저작물은 생산, 유통, 소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영상저작물이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저작권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여러 주체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진원·남형두(2006)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작권 법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본 훼손이 없고 다량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복제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의해 저작권법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저작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면 법제론적 해법 이외에 갈등의 원인들을 미리 파

4) 특히 법학계에서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ce: ECL)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유수현(2010)은 전자원문서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ECL을 주장하고 있다.

5)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권리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보상금 수령 신청 및 필요 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기업 및 일반 이용자는 사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 관련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관련 신탁관리단체 등이 축적해 온 저작권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 158만건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매일경제, 2010. 12. 22). 저작권 찾기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2011년 2월 10일 현재 미분배 보상금액이 약2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금 관리단체 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 연구의 대상인 신탁관리단체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악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진·채종현(2006)이 갈등관리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갈등의 원인과 구조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학 분야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저작권 귀속문제와 저작권료 배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였을 뿐 지금까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안종묵(2006)의 연구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문헌연구에 의한 연구로서 방송산업 분야의 저작권 신탁관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⁶⁾ 지성우·최민재(2008)는 국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 형태와 현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저작권 갈등 해결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법해석은 저작권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실제 거래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무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작권법에 근거해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개별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임정수·김재영, 2006).⁷⁾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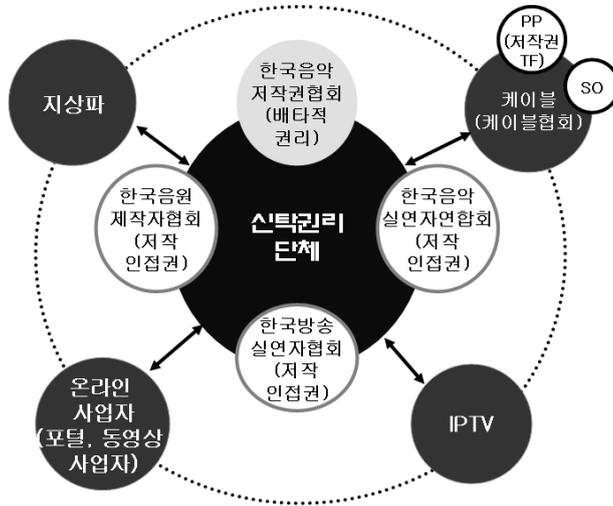
- 연구문제1: 방송사업자들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갈등 요인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2: 방송사업자들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에서 현재 방송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음악저작권 관련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개별 권리자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3대 신탁저작권 관리단체들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 FKMP),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KAPP) 등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지상파 방송

6) 안종묵(2006)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서 동일분야인 경우 단수 체제의 원칙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신탁관리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급한 과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표준 식별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 물론 방석호(2003)는 개별계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저작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기본적 관계는 시장원리에 따른 직접계약(direct licensing)에 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저작자의 지적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관계도



사와 음악사용량이 많은 음악채널PP들은 이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사용료 요율 및 징수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신탁관리단체들의 권리 소유는 동일하지 않다. 음저협은 본 저작자의 신탁관리단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반면 음실연이나 음저협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해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박석규, 2008). 따라서 분쟁 발생시 본 저작자의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은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음실연이나 음저협은 민사소송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소유 형태의 차이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중 방송사업자와 가장 협상력이 있는 단체는 음저협(KOMCA)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관리단체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저작물의 이용 시에는 본래 저작권 이용자와 저작권 권리자 간의 개별 계약이 원칙적이거나, 방송사업자 협회가 이를 위임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개별 지상파 방송사업자(KBS, MBC, SBS)와 신탁관리 단체가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고, 방송협회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다. 케이블의 경우 PP와 SO가 케이블TV협회

에 협상을 위임하여 음악저작권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PP의 경우는 2009년 저작권 TF팀을 구성하여,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관련 사업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무법인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3. 연구방법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들 간의 저작권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송사의 저작권 업무(법무팀) 담당자 5인(지상파 1인, PP 2인, SO 1인, IPTV 1인), 신탁관리단체(음저협, 음실연, 음제협) 방송사업팀 담당 3인(계장, 대리, 팀장), 교수 2인(신문방송학 1인, 법학 1인) 등 총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송사업자별로 신탁관리단체와 맺고 있는 계약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케이블PP의 경우에는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신탁관리단체와 가장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2개의 PP 소속 관계자를 포함시켰다.

심층인터뷰는 2009년 6월 20일 -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현업인은 눈덩이 굴리기 인터뷰(snowballing interviews) 방법으로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첫 소개를 받은 전문가(분석결과에서 케이블PP 1로 표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문가를 추천받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현업 전문가의 경우 사전 이메일로 인터뷰 내용을 전달한 뒤 인터뷰 허락을 받고 해당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인터뷰를 1시간-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학자의 경우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대면 심층인터뷰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Semi-Constructed Questionnaire)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의 인터뷰 대상자에게 제시한 공통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며, 학자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첫째, 현재 귀하의 소속 회사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방송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구체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갈등요인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귀하의 소속 회사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방송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방송사업자-신탁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저작권 분쟁의 핵심 원인은 외국에 비해 낮은 저작권료에 있었으며, 그밖에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구조의 문제, 매출액 베이스의 지급 구조 문제,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문제, 이용 내역 자료의 비공유 문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는 국가저작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보호와 이용의 균형있는 정책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1) 저작권료의 수준과 단가 책정 문제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이하 인터뷰 인용문에서는 신탁관으로 표시)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가장 첨예한 부분은 저작료의 수준과 적정 단가 책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탁관리단체에서는 현재의 사용료 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의 수준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저작권료 징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저작권법상 제작자와 실연자의 보상을 1:1로 보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은 아예 법으로 되어 있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매출액대비 2%⁸⁾, 저작인접권자는 1%, 제작자 1%이나, 국가별로 다르다. 국내 현실은 0.03%가 KOMCA, 그 절반(0.06%)이 음실연이다. 곡당 500원 정도인데, 방송 1회 출연료가 15만 원 정도 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실연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외국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신료를 외국 수준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금이 매우 낮다고 본다. (신탁관 2)

한편 방송사업자들은 신탁관리단체가 무조건 해외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 방송시장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저작권료 책정의 기준에 대해 양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8) 최근 최문순 의원은 이진원 씨 사망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디지털 음원 수익의 분배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소비자가 500원을 내고 디지털 음원을 구입했을 경우 서비스 사업자(통신사·음원 사이트 등)에 275원, 신탁관리단체(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45원이 가게 되며 결국 작사·작곡가 각 5원, 편곡자 3원 등 창작자들은 1% 정도의 적은 몫을 가져간다는 구조를 지적하였다(프레시안, 2011. 1. 20).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신탁관리단체들이 국내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외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지상파)

국내 저작권시장의 규모나 인식이 해외와 사정이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우 해외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최근 플랫폼의 다양화로 추가 수익이 방송사에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케이블PP 1)

경제수준, 음악을 이용하는 음악시장규모, 유료시장의 사이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지 외국이 그랬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는 매출액의 1%가 안되는데 중장기적으로 3%까지 가야 한다고 음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케이블PP 2)

저작권료의 수준에 대해 이용자인 방송사업자와 권리신탁사인 신탁관리단체 간의 인식의 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신탁관리단체는 국내 방송시장이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징수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초기 도입 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 사용료 징수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제도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탁관리단체 3은 “갑자기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인상을 통해 국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타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매출액 베이스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들은 매출액 베이스가 적정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며, 곡당 사용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매출 베이스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콘텐츠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일정한 기준도 없고, 마둑체널은 높고 홈쇼핑은 낮다. 정부가 적정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지상파)

현재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이 올라가면 사용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개선되어야 한다. 매출액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음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채널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음악사용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블PP 2)

그러나 신탁관리단체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출액 베이스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신탁관 2는 “실질적인 음악사용량을 체크해서 곡당 사용료를 책정하자는 것인데 곡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놓고도 방송사와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방송은 포괄계약(음저협에 신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는 대신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신 분기별로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량도 많고, 현재 협회가 관리하는 것이 97%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방송사측 입장에서는 실제 방송한 곡 중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곡만 저작권 대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관 1)

2) 저작권 이용료의 승인구조 문제

방송사업자들은 현재 저작권 사용료를 승인하는 구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저작물의 이용자가 가격 결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비공개적 결정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케이블 PP 1은 “가격 결정의 과정이 그리 공개적이지 않다. 가격결정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그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저작권 시장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상파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만 있으면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년 전년도 대비 저작권료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균형있는 안을 제시하여 전년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상파 관계자는 “방송발전기금처럼 ‘음악발전기금’을 제정(예, 프랑스) 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료에 대해 정부가 적정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저작권 이용료의 승인 구조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갈등이 제도적 요인에서도 기인하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문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가 권리 남용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방송사업자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PP 입장에서는 ‘복수 신탁관리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케이블PP 2)는 주장과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케이블PP 1) 까지 제시하였다. 실제로 케이블TV방송협회 내에서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가칭)’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케이블TV SO 관계자 역시 “오늘날 방송 환경에서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권리자(신탁자)와 인접권자 까지 일일이 협상을 하고 이용허락을 맡아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복수의 저작권 집중관

리제도를 만들어야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보호(배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케이블TV의 플랫폼과 PP 사업자 모두 현재의 분야별 독점 신탁관리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단체는 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수단체 체제로 갔을 경우 장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탁관 2는 “복수체제인 경우 저작권자나 이용자 모두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신탁관 3은 “복수관리단체는 정부가 정할 문제이지만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서비스 경쟁을 하게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복수 체제의 장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복수단체 운영시 관리수수료(20%)가 1.5배 정도 더 든다. 그렇다고 저작권 사용료(관리수수료와는 다른 것)가 낮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신탁관리단체의 복수체제 도입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인 방송사업자들은 절대적 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경쟁에 따른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구조 개선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저작물 사용 서류의 공유 문제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업자들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다.⁹⁾ 그런데 신탁관리단체에서는 방송사업자들이 제대로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불만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방송사업자들은 신탁관리단체가 알아서 모니터링하고 이용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탁관리단체들은 방송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 자료를 신탁관리단체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PTV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규정에 의하면 권리자의 경우 사용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이를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제107조 위반의 경우에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괄적 사용허락을 해주는데 분배 자료가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음악 큐시트가 와야지 우리가 분배를 파악하는데 음악을 사용하지만 하면 끝이라고 보고 비협조적이다. (신탁관 1)

9)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들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별도로 모니터링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모니터를 확보하고 있다. (신탁관 2)

5) 저작권 분쟁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한편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에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가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축, 저작권법의 개선, 공정이용과 저작권 보호간의 균형있는 정책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 국가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신탁관리를 승인제로 지정하고 있지만 영미계에서는 자유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오히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개념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현재 저작권료는 당사자 간 협상 영역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방송사업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저작권 관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저작권 관리 정책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가져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권리 관계가 복잡한 디지털콘텐츠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적 기구와 관리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저작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유저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받아 쓰고 사용한 것은 카운트 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저작자들도 왕성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사용자 또한 떳떳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케이블SO)

또한 매출액 베이스가 아닌 사용료 베이스로 저작권료를 정해야 한다는 방송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신탁관리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IPTV 사업자는 시스템상 가능한 상황이며 다만 민간 신탁관리단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도 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PTV는 시청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분배는 확실하다. 공공기관에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준다. 하지만 음저협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영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정보취급의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 민간업체에 어떻게 주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시스템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전체 시장 중의 몇 %가 사용되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콘텐츠만 되어 있는데, 음악이나 작가 부분도 만들고 있다. 인물DB, 음악, 영화 등 모든

DB가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IPTV)

각 저작권마다 관리되는 정보가 다를 경우에 활발한 유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이 마련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융합콘텐츠가 유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권리관리정보란 공동저작물 등을 언제 누가 작성했는가, 권한의 범위 등을 표시하는 것인데 현재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어문, 음악, 영화, 영상콘텐츠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작업이 진행 중인데 어문을 제외하고는 권리정보가 복잡하다. (케이블 PP 1)

(2) 정부부처간 협력체계의 구축

뿐만 아니라 현재 저작권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주체는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인데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콘텐츠 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방통위와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저작권료가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통위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장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다른 저작인접권자에 비해 열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저작권 업무를 가지고 가야 한다. 문화부와 방통위가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방송법에 만들어야 한다. 주무관청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저작권은 문광부가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방통위를 관리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케이블PP 1)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 문광부가 해결 못하고 조정역할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방송사업자를 위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케이블 PP2)

또한 방송사업자들은 정부가 저작권 이용을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협상에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출발점이 가격이므로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 현재는 저작권료에 대해 정부가 관심이 없다. 당사자간 계약이라는 입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쟁을 낳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가격결정 단계를 사업자단에만 미루어 두지 말고,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한 금액에서 저작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케이블PP 1)

방송사업자들이 방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탁관리단체에서는 현행처럼 문화부 관리체제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관 2는 “문화부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에 많은 중재를 하여, 원만하게 처리되었다.

행정기관인 문화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외국도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문화부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어느 정부 부처가 관할권을 가지든 정부에 의한 협상 중재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학계 1의 지적이며,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산업 영역에서의 분쟁에 대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창작자가 아닌 한 분쟁의 제기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평화로운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기보다는 결국 소송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따라서 창작자 또는 제작자의 이익과 방송사업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양당사자가 쉽게 접근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융합 부문 관련 저작권법의 개선

방송저작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상호 의견의 차이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저작권법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의 특수성에 대한 법적 배려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는 저작권자이면서 저작인접권자이고, 또한 저작권 이용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율 이상의 인상을 제한하는 저작권법상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케이블PP 1)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일정 정도 공공재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다. 더구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신탁관리 단체들의 전횡이 저작권자는 물론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며 문화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어 저작권 관련 법령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케이블SO)

특히 융합 부문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미디어와 디바이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저작권법은 사후약방 조치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실상 저작권 침해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대량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유형의 OSP 및 대형포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탁관 2)

IPTV에 적용할 수 있는 투명한 컨버전스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에 대해 KOMCA와 계약해야하는데 계약 틀 자체가 없어서 신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융합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컨버전스 요율’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 부르고 있다. (IPTV)

융합콘텐츠의 생성 및 유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결문제로서는 융합콘텐츠의 제작·유통을 위한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 범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 권리자를 위한 법제는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보호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계 2)

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경우 아직까지 분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 외에 방송의 인터넷에 의한 ‘동시재송신’, ‘이시재송신’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덕영·이일호, 2009). 특히 현행 저작권법상 IPTV가 방송인지 전송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저작권료는 전송이 방송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결정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IPTV방송에는 1) 실시간 방송 2) 다시보기 3) 인터랙티브 세 가지가 있다. 방송이나 전송이나 논의에 대해서 서비스형태가 일방향인 경우는 방송이고, 쌍방향인 경우는 전송이라고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송인 경우 효율이 두 배 정도 높은 데, 현재는 중간 정도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러한 합의안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며, 별 문제가 없으면 문화부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효율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방송시장과 전송시장이 단절되어 형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송통신융합 시장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 (신탁관 1)

IPTV의 성격이 저작권법상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인데, 검토 후 방송에 해당된다면 보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청구할 것이나 이는 개별 음반사가 청구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본래 저작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데, 방송은 특수한 경우라 그러는 것이고 전송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법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나 사용자들이 혼선이 있다. (신탁관 3)

방송사업자는 수익성 때문에 전송으로 오고 싶어 하고, 전송사업자는 홍보성 때문에 방송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IPTV이다. 예를 들어 전송에 있는 멜론이 IPTV로 들어오면 과연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있다. 멜론과 그 내에 있는 MLB(Music Licence Bank)는 현재 전송으로 되어 있는데, IPTV로 들어와 방송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IPTV)

이와 같은 논란은 IPTV의 등장 초기에 방송이나 통신이나를 놓고 (구)방송위와 (구)정통

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다가 결국 IPTV법을 별도로 만들어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닌 상태로 규정지어 놓았는데 IPTV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서 다시 성격 규정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신탁관리단체 관계자는 저작권법에서도 IPTV는 중간 저작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중간에 놓이는 게 맞다. 디지털음성송신처럼 또 하나의 조항을 만들든지 한 쪽에 편입해야 할 듯하다. 개별 방송사가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관리자가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IPTV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요율부분에서는 웹캐스팅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전송도 매출액 베이스이다. 전송은 매출액의 45%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TV가 아니라 벽스나 소리바다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음제협 같은 경우는 25%-28%를 받고 있다. 방송과 비교하면 열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IPTV는 사실 이런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이 해석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다. (신탁관 3)

IPTV를 공중 송신 중 과연 어느 카테고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와 관리자 간의 권리처리 방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송은 배타적 권리로 신탁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방송과 (디지털음성) 송신은 보상청구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송은 음실연이 신탁을 받은 부분만 행사하게 되어 있다. 방송과 (디지털) 음성송신은 정부에서 정한 업체가 권리를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처리가 비효율적이다 보니 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IPTV의 경우, 신탁권리로 처리하게 되면 처지가 현재 국내 음악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0%정도에 대해 위험부담이 생긴다. 즉 신탁하지 않은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탁관 2)

(4) 공정 이용¹⁰⁾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있는 정책 모색

한편 정부가 저작권의 보호와 더불어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인터뷰 대상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는 정부는 저작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여야 한

10) 박경신 (2008, 93-94) 은 라이선스나 양도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공정 사용’ 또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설명한다. 공정사용이라는 것은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일정한 저작권 침해는 도리어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나 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TV프로그램에서 비평의 대상이 되는 영화나 책의 일부분을 보여주지 않고는 비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 저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보호촉진(이는 대부분 권리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침해된 것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나타남)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이 적절히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 누구나 권리자 및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저작권문화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함께 꾀하기 어렵다. (학계 1)

저작권을 허락 기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이용’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계 2)

저작물 이용자인 사업자와 권리자 대행기관인 신탁관리단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상생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들이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균형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이용’과 ‘저작권보호’의 두가지 저작권법 목표에서 후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지상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서로 상생모형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실연자단체(연예인, 개그맨)와 협상할 때는 상생모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음악 저작권협회와는 못찾고 있다. (케이블PP 1)

음악을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인 엠넷이 사실상 가장 수익성이 낮다. 권리자가 이용자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야지 권리만 주장해서는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KMTV라는 음악채널의 경우 음악채널만으로는 비전의 한계를 느껴 채널을 종합오락으로 변경시켰다. (케이블PP 2)

신탁관리단체에서도 상생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들이 느끼는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29조¹¹⁾나 시행령 제11조¹²⁾ 등에서 충

11)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히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자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수레바퀴의 양측과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많이 신설되었으나,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경우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를 통하여 제한적 열거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권리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당사자 간 협의가 불성립시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조정결정과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신탁관 1)

입법을 통한 법문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양측은 상호 상생의 관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탁관 2)

그러나 방송사업자와 학계에서 저작권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에 치중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정책 방안이나 제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련의 입법은 대부분 권리자측을 위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종래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이 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소위 '3진 아웃제'¹³⁾(실제로는 4진아웃)의 도입으로 그러한 비판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경향은 부득이한 면도 있지만, 저작권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도 신장시킬 수 있다는 면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계 1)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유희주점 및 경륜장, 전문체육시설에서의 공연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13)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계정 삼진 아웃제도와 게시판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용자계정 삼진아웃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복제물의 삭제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러한 경고가 3회 이상인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의 이용자 계정(해당 이용자의 다른 계정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에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한편 게시판 삼진 아웃 제도는 3회 이상의 반복적으로 경고의 대상이 된 게시판도 6개월 이내에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삼진아웃제도는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보공유연대, 2010).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아직까지 방송학계의 학문적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은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간의 구체적 갈등 이슈 문제를 다루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갈등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향후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쟁점사항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양자 간의 갈등 구조에서 핵심요인은 저작물 사용료로 나타났다. 저작권료의 문제는 방송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신탁관리단체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료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고 신탁관리단체는 국제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협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결정한다면 국내 방송산업 매출규모를 글로벌 기준과 비교 평가하여 정부가 적정수준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신탁관리단체도 당장 글로벌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인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양자 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저작권료의 승인 구조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 있는 방송사업자가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방송사업자가 희망하는 정부 부처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작권료 협상은 당사자간의 개별 협상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심과 개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문화부와 방통위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상파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지상파 재전송 협상도 사실상 개별 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양자 간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불거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하여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관리단체와의 문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갈등은 방송사업자간의 갈등과는 또다른 차원의 이슈이고, 저작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나 문화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였을 경우 부처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협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 하에 있는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고,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료의 지출 증대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콘텐츠산업의 실질적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도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문화부와 협력체

계를 가질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송콘텐츠의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독점 신탁관리구조를 경쟁체제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임원선(2006)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신탁관리단체가 복수일 경우 방송사 등 대규모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관리비용도 늘어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신탁관리단체가 다수일 경우 그만큼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료 및 저작물 이용약관 등 이용조건에 대한 결정 절차에 이용자 단체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분쟁 해결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최근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부는 2011년 3월 22일 ‘저작권 신탁분리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저작권 분리신탁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분리해 신탁하는 제도로, 신탁단체 복수화와 함께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주목을 끌어왔다(디지털타임스, 2011. 3. 22).

넷째, 스마트 미디어와 같이 융합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2009년 개정되었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기술발달에 따른 저작권 보호나 이용의 행태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미디어를 통한 저작권 보호나 이용은 제도적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송민정(2010)이 지적하고 있듯이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저작권자이면서도 포털의 실시간 방송이나 UCC/웹하드에서의 불법 유통,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사 유료방송에서의 저작권 불법 침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IPTV의 경우 현재는 방송법과 별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만약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되어 IPTV 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 위상이 바뀌게 된다면 저작권료는 또다른 기준이 매겨져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료 문제를 수익구조와 연결시켜 방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 갈등은 해당 이슈와 관련 주체가 매우 복잡해서 그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자료 수집과 축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이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산업분야의 저작권 갈등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이면서도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분야의 현장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송현업에서도 저작권 전문가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 직접인터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가능한 한 그들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의 형태로 논문에 많이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갈등요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갈등과 소송 사례 등 좀더 구체적인 산업적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지 못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구체적

인 소송 사례들을 여러 건 접하였으나 이를 사례별로 분류하고 소송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재해석 등을 필요로 하는 또다른 연구문제여서 이 논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국내의 갈등 요인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정밀한 비교 연구까지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기태 (2008). 『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대호 (2007). 방송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방송연구』, 겨울호, 83~108.
- 김동규 (2007).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실태 분석. 『방송연구』, 겨울호, 27~58.
- 김민호·정인숙·지성우 (2009). 『융합시대의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관한 합리적 규제방안』. 방송통신위원회.
- 김영덕 외 (2007). 방송산업의 미래전망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 김인경·조미애 (2008). 국내 외주제작 현황에 따른 활성화방안 모색. 『동서언론』, 제11집, 273~295.
- 김재영 (2003). 국내 외주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 『방송문화연구』, 15권 2호.
- 김희수 (2010. 2. 3).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Available: <http://curee.kr/60114468223>
- 김희경 (2009).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의 전제조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3-4호, 49~87.
- 디지털타임스 (2011. 3. 22). 저작권 분리신탁제도 도입 추진.
- 류중현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매일경제 (2010. 12. 22). 저작권찾기 사이트 개설... 문화부, DB 158만건 제공.
- 박경신 (2008).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덕영·이일호 (2009).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서울: 세창출판사.
- 박석규 (2008).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과 멀티플랫폼』. 서울: jinhan M&B.
- 박진·채종현 (2006).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굿인포메이션.
- 방석호 (1998). 방송영상물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방석호 (2007).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민정 (2010). 국내외 스마트TV 추진전략과 3대 핫이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강 자료.
- 안종묵 (2006). 저작권법 재검증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243~284.
- 오익재 (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 서울: 성안당.
- 유수현 (2010).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서비스 실현.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5~110.
- 윤선희·조용순 (2009).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28호,

229~262.

- 유의선 (1997).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저작권의 이용 및 침해배상.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가을호, 통권 제1호. 111~143.
- 은혜정 (2006). 방송영상물 공정거래 확립 방안 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06-07.
- 이상정 (2006). 디지털환경 하의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 저작권』, 제74호.
- 이은지 (2006).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90~118.
- 이제영·유승관 (2007). 유비쿼터스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수급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4). 123~132.
- 임원선 (2006).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법. 2009. 7. 31 일부 개정. 법률 제9785호.
- 저작권 찾기 (2010. 2. 8). 저작권 찾기. Available: www.right4me.or.kr
- 정보공유연대 (2010. 2. 10). 저작권 삼진아웃제. Available: <http://ip.jinbo.net/node/2552>
- 정운경 (2005). 『저작권과 방송콘텐츠 유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운경 (2008).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포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초연구. 2008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포맷팅 R&D 연구보고서
- 조의진 (2006). 방송 외주정책과 저작권 귀속 논쟁에 대한 연구 -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4, 337~370.
- 주정민 (2011. 1. 26). 스마트미디어 등장과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선방향.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제문.
- 지성우·최민재 (2008). 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재산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외주 제작사의 2차적 저작권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32-2, 283~317.
- 최진원·남형두 (2006). 매체 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 『커뮤니케이션이론』 2호. 150~190.
- 프레시안 (2011. 1. 20). ‘아이돌’ 카라에게 있고, ‘인디’ 카우치에게 없던 것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디지털방송 콘텐츠시장의 생산 및 서비스구조분석 연구」.
- 한국일보 (2011. 2. 24). 문예학술저작권협, 작가 동의없이 신탁 저작권 행사 ‘물의를」.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 7). 집중관리단체. Available: <http://www.copyright.or.kr/help/site/site02.do?contentId=27>

최초 투고일 2011년 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3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1년 3월 30일

Analysis of Conflict Factors between Broadcasters and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In-Sook J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Kyungwon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conflict issues between broadcasters and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which are operating exclusively under a permission system. The objective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i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assurance of convenience of user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structure of content industry is going digital, the issue of contents use and distribution is becoming as important as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opyright policy.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arried out a in-depth interview of 10 copyright experts including broadcast company,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academic field. The result shows that copyright clearance problem is the most serious issue among them and it could be a crucial matter in the near future because the royalty is probably a essential factor to affect on the broadcaster's income structure. The copyright experts suggested variou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solving as follows ; the improvement of uncertain rate permission system, introduction of competitive system in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and amendment of Copyright Act and more.

Key words : broadcaster,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